

2026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부모와 별도 거주)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 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재 산) 일반재산 1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개월/120만원, 생애 1회)
- 지원인원 : 상·하반기 각 60명 ※월세 금액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7. 31.(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심사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4, 7, 10, 12월), 개인별 계좌 입금

〈월세 지급방식〉

- 3분기 월세 지원 예시
 - 월세 선불, 후불 관계 없이 7월, 8월, 9월 이체확인 된 월세만 지원 가능하며, 2~4분기도 동일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26. 7월 이전인 경우
 - 26. 7월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기존 임대차 주택 재계약 또는 관내 타 주택 (주택요건 충족) 이전 시 변경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원 가능(최대 12개월)
- 최초 월세 납부월이 26. 8월인 경우
 - 최초 월세 납부월이 26. 7월이 아닌 8월 월세가 최초이면 최대 11개월 지원
 -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2 자격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령) 19세~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선정된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당해 사업 계속 참여
- (주소)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주택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2,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재산) 일반재산 총액 15,000만원 이하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 신청인 청년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 포함)

○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 환산율* 적용하여 70만원 이하까지 가능

*전월세 환산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적용) : 기준금리(2.5%) + 2%(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 산식 : (보증금 x 보증금 월세 환산율(4.5%) ÷ 12개월) + 월세 ≤ 70만원

(예시1) 임차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

→(1천만원 x 4.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65만원 = 680,000원 ⇒ 신청 가능

(예시2)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신청 불가

→(2천만원 x 4.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65만원 = 720,000원 ⇒ 신청 불가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모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부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부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3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생애 1회 지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사업 수혜중인 자(종료 후 신청 가능)
 - 예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 ② 공공 전월세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 지원 등)
※ 단,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7. 31.(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 * 청년 본인(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이 직접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구분	제출 서류명	발급처
작성 서류	①신청서	·공고문[서식1]
	②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서식3]
	④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구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④제출 시 ⑨~⑬ 제출 불요	·공고문[서식4]
발급 서류 (필수)	⑤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등 기재된 별지 포함 제출 -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신청인
	⑥통장 사본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계좌 불가	·신청인
	⑦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미혼: 본인, 부, 모 각 1부 (총 3부) - 기혼: 본인, 본인의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각 1부 (총 6부)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⑧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④ 제출시 ⑨~⑬ 제출 불요	⑨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⑩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원 모두) * 전국 단위, 세목 전체, 2025~2026년 기준 발급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 미과세 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위택스(www.wetax.go.kr)
	⑪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 2025년 기준) ⑫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2025~2026년 기준) ⑬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 모두, 2025~2026년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① : 온라인 작성(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 ▶ ② ~ ⑬ : PDF 파일 첨부

5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 소득 재산, 주택 요건 등)
- (2단계)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심사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지 표	배 점	심 사 기 준				
소득기준	50	10	20	30	40	50
		120%이하	100%이하	90%이하	80%이하	70%이하
임차보증금 기준*	40	10	20	30	40	
		1억5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연속거주 (공고일 기준 역산)	10	2	4	6	8	10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 임차보증금 기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임차임×12) ÷ 4.5% 로 계산

· 심사기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①소득이 낮은 순 ②파주시 장기(연속)거주 순 ③연장자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 : 60명 내외

※ 지원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자 추가 선정(추가 선정자 개별안내)

○ 심사결과 발표 : 26. 9. 18.(금) 예정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의신청 접수 : 2026. 9 .21.(월) ~ 9. 23.(수)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 미 선정자 귀책사유(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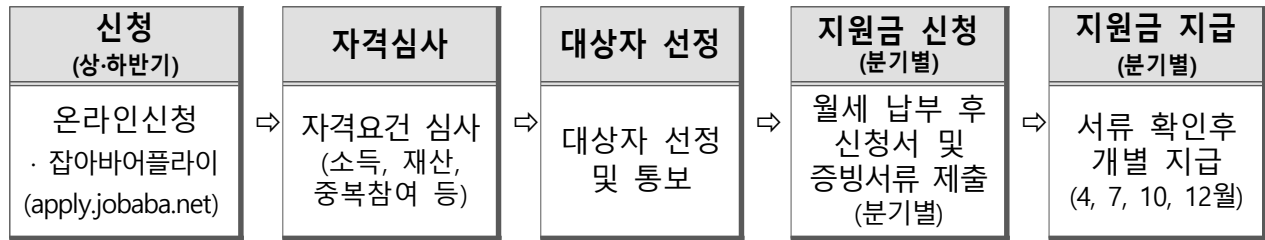
※ 접수 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최종 선정자 공고 : 2026. 9 .30.(수) 예정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공고 개별 확인(합격자는 별도 안내)

6 지급 및 지원절차

- **지급방법** : 분기별 30만원 계좌 입금(4, 7, 10, 12월)
 - (청년) 월세 선 납부 → (청년) 분기별 10일 이내 월세 지급 신청(지급 청구서 및 월세 납부 증빙자료 제출) → (市) 분기별 25일 전후 입금
- **지원절차**



7 신청자 의무사항

- 분기별 10일 이내에 청구서^[서식6],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서식7] 제출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지원 중지 신청서^[서식8] 제출

▶ 지원 중지 사유 (중지 사유 발생일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선정되는 경우
- 가족 합가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으로 주택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이유 없이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 준용
- 기타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2,8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미기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연 락 처)	
	(가 구 원 수)		(이 메 일)	
	(주 소)			
자격 요건	소득사항	근로소득(월 원)		기타소득 (원)
	피부양자 경우	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사항	물건지 주소		
		보증금 원		임차료 원
		계약기간 20 . . ~ 20 . .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다가구/다세대 ☐ 기타()	
지원금 입금계좌	예금주(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
유의 사항				확인 (v 체크)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파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택구매 등 월세 지원 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월세 지원금은 중지됩니다.			
3	선정 후 급여 청구 및 기타 사후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위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파주시 청년주거정책에 참여하지 못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국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사업을 수혜중인 경우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중인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파주시 월세지원은 생애1회 지원)			
6	제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 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파주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가족 합가로 신청 당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변경으로 주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이유 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선 납입한 후 지급신청 시 월세납입내역을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임차주택현황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차량·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5년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부전산시스템(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의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 확인 급여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사항, 건강보험정보 등 관련자료 일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파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의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 확인 급여 처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관계	성명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자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필서명
건강보험 부양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파주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서명
본인		-	☐ 예 ☐ 부	
(배우자)		-	☐ 예 ☐ 부	
(부)		-	☐ 예 ☐ 부	
(모)		-	☐ 예 ☐ 부	
		-	☐ 예 ☐ 부	

< 동의 대상 >

1. (전체)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모두 동의 * 동거인 제외
2. 기혼의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배우자 동의 추가
3.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피부양 이력이 있을 경우: 부, 모 등 부양자의 동의 추가

【서식 5】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 소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상실 ☐ 환수 ☐ 기타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선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서명 또는 인)</p> <p>파 주 시 장 귀하</p>				
안	내	미선정자의 귀책사유(구비서류 미비 등)로 인한 미선정은 이의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구	비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	류			

【서식 6】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청 구 분 기		분기	청 구 월	~
청 구 금 액	금	원(₩)		
급여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p>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서명 또는 인)</p> <p>파 주 시 장 귀하</p>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지급에 따라 해당 분기(3개월)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기 중 중지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 시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좌이체증 각 1부. 2. 본인명의 급여계좌 통장사본(최초1회 및 기존 신청내역과 변경 시) 1부.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변 경 사 항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p>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파 주 시 장 귀하</p>				
※붙임 :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서식 8】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지(취소)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 ① 중지	중지신청	사유 발생일			
		사 유	☐ 타 사·군 전출 등 구체적으로 작성		
☐ ② 취소	취소신청	구 분	☐ 자의취소 ☐ 선정하자 ☐ 부정수급 ☐ 기타		
		사유 발생일			
		사 유	☐ 타사업 중복(행복주택 입주 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중지/취소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div>					
파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해당 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① 중지는 사업참여자로 인정되므로, 재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 ② 취소는 사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며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